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184)

2. 제출이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강습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복지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체계에 따른 개정(안 제3조 및 제7조)
-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7조)
- 다.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의 적용 규칙 명확화(안 제8조)
- 라.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인상(안 제7조 제1항 관련[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10.15. ~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u>조례</u> ----- ----- -----.
제7조(사용료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책임이 아닌</u> ----- -----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 6. (생략)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③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36,800	
탁구장(단식)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헬스장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34,700	
	대학생, 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51,000	
당구장	대학생, 성인	4,800			초, 중, 고생	3,600			
독서실	아동·청소년 및 성인	300	9,000원 (월간 사용료)						
시설대관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헬스장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독서실	아동·청소년 및 성인	500	11,000원 (월간 사용료)						
시설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3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 1) 토,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p>4.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p> <p>1) 단일시설의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 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p> <p>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p>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	---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강습료 구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 어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음악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문예 및 창작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상담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						

비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p> <p>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악 영역</p> <p>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p> <p>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 문화 영역</p> <p>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p> <p>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p> <p>2. 강습료 할인</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	--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강습료 구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 어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예체 능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3,000	91,000	106,000	118,000	
정보·과학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취미·교양·문화 등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상담	초중고생,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30,000	36,000	
	대학생, 성인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						

비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p> <p>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p> <p>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p> <p>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p> <p>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p> <p>2. 강습료 할인</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	---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09.12.3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제정한지 10년이 넘어 현재의 물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 간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구립 청소년 시설 사용료·강습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영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리구에는 서울시수련관 1개소, 문화의 집 3개소로 총 4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사용료·강습료 관련 규정은 사용료는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등이고, 강습료는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문예 등입니다. 인상금액은 인근 자치구인 용산구, 은평구, 중구와 비슷한 금액으로 이들 자치구는 2016년도에 사용료 및 강습료를 인상하였습니다. (표 1), (표 2)
-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강습료 인상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10.15.부터 11.4까지 20일간 공고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공공

요금 인상 시 사전절차인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도 지난 2020.8.4. 개최하여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시설이용자 및 주민에게 사용료 및 강습료 인상 요인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시설 현황 1부.
- 2. 청소년시설 조례 사용료·강습료 규정 현황 1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4. 관계법령 1부.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시설 현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문화센터)

구 별	계	서울시 수련관	구 립 시 설		비 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마 포 구	4	1	-	3	
강 남 구	3	1	2	-	
강 동 구	1	1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강 북 구	1	1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강 서 구	2	1	1	-	
관 악 구	1	-	1	-	
광 진 구	1	1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구 로 구	2	1	-	1	
금 천 구	1	1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노 원 구	3	1	-	2	
도 봉 구	3	1	-	2	
동대문구	1	1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동 작 구	3	1	-	2	
서대문구	2	1	-	1	
서 초 구	2	-	2	-	
성 동 구	2	1	-	1	
성 북 구	2	1	-	1	
송 파 구	3	-	2	1	
양 천 구	2	1	-	1	
영등포구	2	1	-	1	
용 산 구	2	-	1	1	
은 평 구	3	1	-	2	
종 로 구	0	-	-	-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중 구	2	1	1	-	
중 랑 구	2	2	-	-	구립 수련관·문화의집 없음

【붙임 2】

청소년시설 조례 사용료·강습료 규정 현황

구 별	사용료, 강습료 규정 현황
마 포 구	사용료 :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독서실, 시설대관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서울시	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시설대관 강습료 : 체육시설 이용수업, 외국어, 예체능, 취미·교양·문화 등, 상담, 청소년사업
강 남 구	사용료 : 수영장 및 체육시설, 독서실, 노트북실, 시설대관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강 동 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강 북 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강 서 구	사용료 :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공부방, 시설대관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관 악 구	사용료, 강습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광 진 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구 로 구	사용료, 강습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금 천 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 원 구	사용료 :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강습료 : 외국어, 음악·미술, 정보·과학, 생활체육, 문예·창작, 상담, 체험행사
도 봉 구	사용료 : 청소년문화의집 - 인터넷 카페, 사랑방, 동아리방, 공방, 공연 연습실 등 독서실 - 입실료, 사물함, 인터넷 카페 등
동대문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동 작 구	사용료 : 독서실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서대문구	사용료 : 시설대관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서 초 구	사용료 : 독서실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성 동 구	사용료 : 헬스장, 독서실 수강료 :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성 북 구	사용료 : 독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연습실, 동아리실, 강의실, 음악연습실 강습료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
송 파 구	사용료, 강습료 등 구청장 사전 승인(※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양 천 구	사용료 : 대관료, 대여료, 사용료(미디어 카페, 체육시설, 뮤직박스), 독서실 강습료 : 외국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문예 및 창작, 상담
영등포구	사용료, 강습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용 산 구	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시설대관 강습료 : 체육시설 이용수업, 외국어, 예체능, 취미·교양·문화 등, 상담, 청소년사업
은 평 구	사용료 : 시설대관 강습료 : 체육시설 이용수업, 외국어, 예체능, 취미·교양·문화 등, 상담, 청소년사업
중 구	사용료 : 체육관, 공연장대관, 강의실 프로그램실 강습료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 등, 취미·교양·문화, 상담, 청소년사업
중 랑 구	구립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없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박상현 (☎ 3153-8983)

【붙임 4】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